

예산총칙

201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| 297,974,068 | 8,939,222 |
| 일반회계 | 257,716,514 | 7,731,495 |
| 특별회계 | 40,257,554 | 1,207,727 |
| 공기업특별회계 | 11,034,938 | 331,048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11,034,938 | 331,048 |
| 기타특별회계 | 29,222,616 | 876,678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12,000 | 360 |
| 기반시설특별회계 | 45,653 | 1,370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| 200,000 | 6,000 |
| 의료보호특별회계 | 655,624 | 19,669 |
|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| 2,052,000 | 61,560 |
| 장학사업특별회계 | 6,994,500 | 209,835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2,083,630 | 62,509 |
|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904,000 | 27,120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16,275,209 | 488,256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[채무부담행위사업] "해 당 없 음"

제 4 조 [계속비사업]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[명시이월사업]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,920,266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